

2018 서울시 9급 재난관리론

총평

안녕하세요?

수험생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서울시 9급 문제는 다양한 법률들을 혼합하여 출제를 하다 보니 세세한 검토가 없이는 고득점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문제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그리고 「재난관리기준」 및 방사선 비상계획에 관한 문제가 생소하여 다소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교과서나 평소 강조해 오던 법률에서 많이 출제가 되어 성실히 공부를 해왔던 수험생 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며, 평균 합격점수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석현 올림

1. 사회재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의성과 의도성, 즉 종교적·정치적·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 ② 정보화, 산업의 첨단화 등 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성이 증가한다.
- ③ 사회적 재난관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시민 사회 등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할 때 그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금융, 전기, 정보통신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답 ② : 사회재난은 일면 인위재난이기도 하는데 인간의 의족적이고 계획적이며 테러와 같은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 사회재난은 정보화, 산업의 첨단화 등 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복잡해지고 짝 짜여져 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욱 떨어지고 재해재난의 발생빈도나 복합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상 자연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 ②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 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④ 시·군·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정답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부담기준) :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퍼센트, 시·군·구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퍼센트, 시·군·구가 60퍼센트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퍼센트, 시·군·구가 7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등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3. 재난관리 방식 중 통합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전달 체계는 다원화 되어있다.

② 재난에 대한 인지 능력은 강력하며, 종합적이다.

③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이 있다.

④ 관련부처 및 기관은 단일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부처 및 기관이다.

정답 ① : 재난관리 방식 중 통합관리 방식은 정보전달 체계가 단일화 되어 있다.

구분	분산관리 방식	통합관리 방식
성격	유형별 관리	통합적 관리
재난인지능력	미약·단편적	강력·종합적
효율성	낮음	높음
책임성	책임의 분산	과도한 책임(부담)
신속성	낮음	높음
총체성	산만한 관리	통합적 관리
활동범위	특정 재난	모든 재난
관련부처(기관)의 수	다수 부처(기관)	소수 부처(기관)
정보의 전달(지휘체계)	다양화	단일화
제도적 장치(관리체계)	복잡	보다 간편
장점	* 전문성 제고가 용이 * 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방지	*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 * 자원봉사자 등 기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단점	* 각 부처 간의 업무의 중복 및 연계미흡 * 자원 마련과 배분의 복잡성	*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 부처이기주의 작용과 기존 조직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 ①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해정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② 보험산정형 재해정보지도
- ③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④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정답 ②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9.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내리는 응급 조치 중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②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③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 ④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 ① 제50조 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11. 호우경보 발령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될 때
 - ②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③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④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정답 ③ : 호우주의보와 경보는 아래 표와 같다.

호우주의보와 경보

종류	호우 주의보	호우 경보
호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를 말함 • 12시간의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에 기상청에서 발표
폭풍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20mm이상의 비가 동반 될 것으로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풍주의보 기준에 시간당 30mm이상의 비가 동반 될 것으로 예상될 때

1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중 대응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②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 체계에 관한 사항
- ③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④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정답 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 영 제3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단계

-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비단계

- 가.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 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대응단계

- 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나.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다.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복구단계

가.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보기>는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 기준으로 (㉡)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① 5월 30일

6월 15일

② 6월 30일

7월 15일

③ 7월 1일

8월 30일

④ 9월 1일

10월 31일

정답 ②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재난관리장원의 개요

6.5 조사결과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기관별, 자원별 자원조사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 적정한 사유를 제출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자원조사,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5의2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에도 불구하고 비축관리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14. 방사선 비상계획상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사선 비상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성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① 백색비상
- ② 청색비상
- ③ 녹색비상
- ④ 적색비상

정답 ②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별표 3] <개정 2011.10.25>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관련)

1.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구 분	기 준
백색비상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청색비상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적색비상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안전관리현장을 제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 8.6.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다. 기존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

다.

구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조(안전관리현장)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항상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무조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③ : ① 중·대규모 재난이 아닌 대규모 재난 ② 방사능재난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음 ④ 는 무조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야 옳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12.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작성·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④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된다.

정답 ④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행정안전부장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18.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해서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③ :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7조(벌칙) ① 제6조의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8조 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7조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보기>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다)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 | | | |
|-------|-----|-----|
| (가) | (나) | (다) |
| ① 5년 | 1년 | 5년 |
| ② 10년 | 1년 | 5년 |
| ③ 5년 | 3년 | 3년 |
| ④ 10년 | 3년 | 3년 |

정답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대한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③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④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사항

정답 ② : ②는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

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